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·조정 등을 위해 두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실무위원은 각각 관련 상임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, 한강수계의 지역 현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수계의 임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

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
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
5.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
장이 지명하는 사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실무위원회) ①・② (생략)	제4조(실무위원회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,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한국수자원공사의 관련 상임이사</u>	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
5. <u>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관련 상임이사</u>	5. <u>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</u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물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52